

다는 서울 강남7단제(H강남이이파크)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공고

[인터넷청약, 모바일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 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5

■ 공급대상: 전용면적 85m²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680세대 중 예비입주자 15세대 (주택관리번호: 2019000316)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4.02.(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 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mark>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하며,</mark>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 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당첨은 무효처리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 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전용 85m²이하)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1세대 2인 이상 청약 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해당 청약은 <u>인터넷(LH 청약센터 -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u>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 기타 다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조]

청약신청(인터넷, 모바일앱)		서류제출 대상자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계약안내	
1순위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 제출	계약한대	
2019.04.12(금)	2019.04.15(월)	2019.04.30(화)	2019.05.03~05.10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10:00~17:00)	(10:00~17:00)	17:00 이후	(등기우편제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1순위에서 접수건수가 모집호수 이상인 경우 15일(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택공급 개요
개 요	10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분양전환가격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단,「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형 발생시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갱신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공급규모

단지	총세대수	공급유형	주택형	주택타입	전용면적	위치	예비입주자 모집세대수	주택관리번호
강남7 (LH강남아이파크)	680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74.8900G	74B-1	74.8900m²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5	15	2019000316

공급대상

	주택형				세대별 주택면적(m²)				70	주택		XI CH	그히	ᅁᄌ	
단지				고니 - 그 뒤의 증용한의 게양면서 네티	공유 대지	_{II TI} 영글 연제	"	잔여 예비	금회 예비자	입주					
- 근시	T 46	타입	유형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	데시 면적(m²)	건설 호수	공가	입주자		시기
강남7	74.8900G	74B-1	확장	74.89	26.9451	101.8351	6.1862	38.1865	146.2078	67	15	1	1	15	미정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 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 74B-1 타입은 태양광 모듈 시스템, 외단열 시스템 적용 등으로 인해 관리비가 타 세대에 비해 적게 나올 수 있으며, 다른 주택타입과 창호 및 환기방식 등 일부 시공상 차이가 있으니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지	즈태형	주택형	주택타입		월 임대료	
닌시	건시	TTS	구역년	합계	계약금(계약시, 10%)	잔금(입주지정기간 내 입주시, 90%)	열 검네표
	강남7	74.8900G	74B-1	96,558,000	9,655,000	86,903,000	935,950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 상기 임대조건은 현 시점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해당 시점의 시세를 반영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 충별 충별 축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9년 9월 1일 이후 전환보증금 증액 시 인하된 전환요율 적용 (6% → 5%)

※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 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지	주택형	주택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강남7	74.8900G	74B-1	112,000,000	560,000	208,558,000	375,950

※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	지	주택형	주택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 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강남	計 7	74.8900G	74B-1	226,660	68,000,000	28,558,000	1,162,61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단지	주택형	주택타입	합 계	택지비	건축비
강남7	74.8900G	74B-1	251,895	112,233	139,662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7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단 지	최초 입주지정기간	분양전환 예정월
서울 강남 7단지(LH강남아이파크)	2014.10.31.~2014.11.30.	2024.12.

Ⅱ │ 신청자격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2.)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u>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자 및</u>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 자격이 없으니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있는 경우임.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구분	순위별 자격요건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액은 10만원으로 계산)
1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 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예비순번)은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릅니다.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순위에 한함)

1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자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해당사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무주택기간	예시1: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 의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 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모집일정,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모집일정

 \mathbf{III}

	신청접수 (현장접수 불가)	서류제출 대상자(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1순위	2019.04.12.(금)	2019.04.30.(화)	0040 05 00 (7)		
2순위	2019.04.15.(월)	17:00 이후	2019.05.03.(금) ~ 2019.05.10(금)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LH청약센터' 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	등기우편 제출 (현장제출 불가)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신청을 받지 않음** [신청자격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19:00 이후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공지사항에 게시]

신청방법 [인터넷 · 모바일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의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국민은행 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발표일 17시 이후에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당첨/낙찰자조회(임대주택)』클릭
-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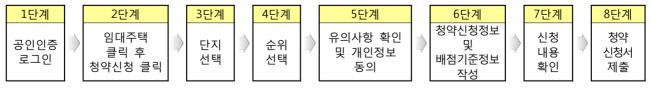
①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 설치

•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 (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충족된 1세대내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개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계약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중복입주가 불가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등 안내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일정 및 장소

IV

- 서류제출대상자는 아래 서류제출 기한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미도달 시 예비 입주자에서 제외함 (계약불가)
 - →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강남7단지 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하시기 바람

서류제출 대상자(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등기우편 발송 주소	
2019.04.30.(화) 17:00 이후 LH청약센터(<u>http://apply.lh.or.kr</u>)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	2019.05.03.(금) ~ 2019.05.10(금) 등기우편 제출 (현장제출 불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입주자 담당자 앞 (우편번호: 06162)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2019.04.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안내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요망]

-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일(2019.05.03.~05.10.)에 예비입주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 우편물 보낼시 봉투겉면에 "강남7단지 1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 미도달시 서류미제출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므로 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비고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본인 준비	
공통사항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ㆍ접수가 거부됨 	양식 첨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자 추가사항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통(3년이상 무주택 입증서류) • 공급신청자가 30세 미만이며 혼인을 한 경우로써 1순위 신청할 경우		

V

계약 안내 및 기타 안내사항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임대차계약 안내 및 주의사항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나서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서류제출처와 동일)로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등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가에 대해 계약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u>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9.04.02.)로부터 임대차계약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및 청약통장을 유지</u> 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경우 모든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10.23.)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내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후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 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LH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 선정 이후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서울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3.10.23.) 및 팜플렛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 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체결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 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 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전화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 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 및 블록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서울 강남 보금자리지구 A7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계룡건설산업(주)(314-81-07954) 현대산업개발(주)(114-81-58853) 금호산업(주)(104-81-3130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예비입주자 당첨자 서류제출 장소 안내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 02.



신청자명 :		핸드폰번호 :
단 지 명 :	[신청형:]	인터넷접수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 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 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 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 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 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

면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 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 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 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 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19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